

# 《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방침》

본 인천광역시여성가족재단(이하 본 기관이라 함)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·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.

본 기관은 주차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만 영상정보를 수집·보유하며 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영상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여러분의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

## ▶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

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합니다.

-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
-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교통정보의 수집·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## ▶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현황

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으며,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, 제3자 제공, 파기,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·관리하고, 보관기간 만료 시 지체없이 파기합니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## 본 기관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[주차관리 및 방법, 시설관리용 CCTV]

관리책임자	경영지원부장 유재열 032-517-2016
접근권한자	경영지원부 이교성 032-517-2035
영상정보 촬영시간	상시(24시간)
영상정보 보관기간	30일
영상정보 보관장소	서버실
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대수	23대

## ▶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현황 : 총 32대

설치장소	활용범위	대수
지상주차장	지상주차장 전 범위	5대
지하주차장	지하주차장 전 범위	4대
수영장	수영장 입구, 매표소 앞, 복도, 풀장 내부	9대
재단 지하 1층	요가실, 기계실(방재실)	2대
재단 1층	로비, 사무실(내부, 입구), 복도, 엘리베이터 내부	5대
재단 2층	대강당 및 사무실 입구, 복도	2대
재단 3층	강의실 입구, 복도	2대
재단 4층	강의실 입구, 복도	2대
별관 1층 입구	별관 사무실	1대

▶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

본 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 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

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에 관한 사항

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

▶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

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. 단,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.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·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. 이때에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.

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할 수 있으며,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통지하여 드립니다.

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
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
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
▶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

본 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

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 다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·제공할 수 있습니다.

-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를 얻은 경우
-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
-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-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친 경우조약,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-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▶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

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있으며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

▶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절차이행

본 기관은 '개인정보보호법' 제23조(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)에 의거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

▶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

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방침은 시행일(2020.4.24)로 부터 적용되며 법령·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·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지체없이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.